

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중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within Incheon Free Economic Zone

김상호*
Sang-Ho Kim

〈목 차〉

- I. 서 론
- II. 국제중재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전망
- III. 국제중재센터의 운영방안
- IV. 국제중재센터의 대외협력 방안
- V. 결 어

주제어 : 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중재센터의 설립, 센터의 운영, 대한상사중재원, 중국국제 경제무역중재위원회, 미국중재협회, 홍콩국제중재센터

* 부산외국어대학교 성경대학 국제무역학과 교수

I. 서 론

경제자유구역은 국가간의 개방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03년 정부가 국가성장 동력사업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가격경쟁력을 가진 중국과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일본의 협공을 받아 마치 넛크레커 속에 끼인 호두신세에 처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정부는 우선 인천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동북아 허브의 중심으로 키워나갈 전략을 세웠는데 이는 인천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공항·항만 등 물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동북아 물류 중심지를 육성하고 외국인에게 친환경적인 경영과 생활환경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세계 유수 기업을 유치해 동북아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장립하는데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생산관련 시설, 국제공항·항만, 국제물류센터, 국제업무단지, 교육기관 및 주거단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구비해야 하며 영어 민원서류의 접수, 외국전문인력의 출입국제도 개선, 외국 교육기관·병원·약국의 진출허용 등 외국인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인천(2003.8.6 지정), 부산·진해(2003.10.27 지정) 및 광양만권(2003.10.27 지정)의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인천지역이 개발면적이나 사업비 측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¹⁾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재경부장관)는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를 위해 2007년 12월 21일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의 3개 지역을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²⁾

경제자유구역은 그 개발을 위해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한편으로 외국기업의 투자가 현실화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한국측 당사자와 외국기업간에 발생하는 투자관련 분쟁의 해결촉진을 위해 선진화된 분쟁해결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현안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법³⁾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상사분쟁 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최근의 선행연구로는 다음의 논문들이 있다. 우선 한국국제상학회와 중앙대 한국전자무역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김형결, 신군재의 논문이 있다. 김형결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동북아 국제상

1) 인천구역이 6,336만평인데 비해 부산은 3,154만평이고 광양만권은 2,691만평이다. 투입되는 추정사업비는 인천구역이 14조7,610억원, 부산·진해구역이 7조6,902억원, 광양만권구역이 8조1,000억원이다.

2) 따라서 선정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협의가 완료되는 지역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정식명칭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서 2002년 12월 30일 공포(법률 제6835호)되고 2007년 4월 11일 일부개정(법률 제8372호)되었는데 8장, 3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중재센타”⁴⁾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혁신과 개발개요 및 상사중재에 관하여 브리핑 방식으로 다루고 있고 신군재의 “ADR정책화를 위한 대한상사중재원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⁵⁾에서는 국내외적인 통상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유일의 상설 ADR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학회와의 유대강화, 마케팅활동의 강화, ADR센터로서의 위상재정립, 범국가적인 지원필요, 국내와 국제 ADR 업무의 이원화, 전문인력풀 확충과 교육강화, 국내외 ADR기관과의 유대관계, 서비스질의 향상, 제도적 개선 등 9개의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상호의 “상사분쟁해결촉진을 위한 한·중 중재기관간 협력의 과제”⁶⁾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상사분쟁 해결촉진을 위해 양국간에 체결된 관련 조약 및 중재협정상의 분쟁해결노력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중국 청도지역의 중재기관과 한국의 중재기관이 협력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김상호의 “개성공단 개발과 상사분쟁의 해결”⁷⁾에서는 남북한간 최대의 경협사업인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상사분쟁의 해결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개성공단 분쟁해결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고찰하면서 개성공단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간 분쟁해결의 연계방안을 다루고 있다. 장승화·김갑유·임영철의 “특집: 국제중재규칙 제정 및 시행에 대한 전망”⁸⁾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제중재규칙에 관하여 중재인의 입장에서(장승화), 중재대리인의 입장에서(김갑유), 중재이용 고객의 입장에서(임영철) 각각 국제중재규칙 시행에 따른 전망을 다루고 있다.

이들 논문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중재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선언적으로 제안하거나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중재규칙의 적용 전망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과는 접근방법과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국제중재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실행해야 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이론적 논거에 의해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 허브의 분쟁해결기구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중재센터 설립의 필요성, 법적근거 및 전망을 고찰하는 한편 고품질의 차별화된 중재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센터의 실질적 운영방안과 대외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4) 한국국제상학회·중앙대 한국전자부역연구소, 「2006년도 학계공동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06.6.9. 목원대), pp.177-186.

5) 상계논문집, pp.187-203.

6) 김상호, “상사분쟁해결촉진을 위한 한·중 중재기관간 협력의 과제”, 「중재연구」 제15권 제2호(2005.8), 한국중재학회, pp.61-91.

7) 김상호, “개성공단개발과 상사분쟁의 해결”,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7호(2006.5),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pp.123-156.

8) 장승화·김갑유·임영철, “특집: 국제중재규칙 제정 및 시행에 대한 전망”, 「중재」 제323호(2007·봄), 대한상사중재원, pp.3-19.

II. 국제중재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전망

1. 설립의 필요성

중재 등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를 통해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기관은 국제기구 산하에 또는 각 국가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세계 각국의 중재기관은 국제중재사건의 자국유치를 위해 상호 경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는 선도적인 ADR센터로서 국제중재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금융 중심지와 비즈니스 중심지인 홍콩과 싱가포르의 국제중재가 발전하였고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의 국제중재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국제기구 내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으로는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내 중재조정센터(WIPO, 스위스 제네바 소재)가 있다.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으로는 국제상업회의소(ICC) 부설 국제중재법원(프랑스 파리 소재-유럽지역 대표), 미국중재협회(AAA, 미국 뉴욕 소재-북미지역 대표)를 들 수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주요 중재기관으로는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 홍콩에 소재하는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아시아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중국의 북경에 소재하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와 청도에 소재하는 청도중재위원회(QAC)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중재법상 ADR분쟁해결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업체 간 분쟁사건의 국내유치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간의 분쟁의 상당수도 선진 외국중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통일적인 사법기관이 부재한 실정에서 각국은 국제거래에서 자국 기업의 이익확대와 국가 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쟁사건을 자국으로 유치하여 해결하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에서는 국제중재가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아의 경제활동과 국제물류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진척에 따라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인천경제권역에 투자하여 영업, 마케팅, 물류, 금융 등 제반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인근에는 남북간 최대의 경협사업장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이 인접하고 있는바 개성공단의 사업진척과 그에 따른 경제활동의 증대에 따른 다양한 상사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무역, 투자 등 비즈니스 활동에 따른 다양한 상사분쟁의

해결촉진을 위해 국제중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쟁해결제도의 구축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한편으로 국제 상사분쟁의 사법질서 형성과 유지에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2. 설립의 법적근거

경제자유구역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에 중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의 지부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 제40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에 대한 경비보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⁹⁾ 중재법 부칙 제3항에서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재법 제41조에서는 중재규칙의 제정과 승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¹⁰⁾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중재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는 경제자유구역법이며 이 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 지부인 국제중재센터를 행정기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설치해야 한다. 부산에는 이미 대한상사중재원의 부산지역본부가 지부로 설치되어 중재 등 ADR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중재원 부산지역본부의 ADR업무수행으로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에 대한상사중재원 인천지부를 설립하는 것이 1차적 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국제중재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등 인센티브는 경제자유구역사업 지원제도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어야 한다.¹¹⁾ 이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상사분쟁 해결기구인 국제중재센터가 중재업무 등 ADR 관련 제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배정, 통신시설 및 사무기기 지원은 물론 제반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업무협조에 따라 2004년 10월 20일부터 매월 2회 직원 1명을 옴부즈만실에 파견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상사중재 관련 상담 및 홍보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중재사건의 접수, 심리 및 판정 등의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¹²⁾ 인천지역 국제중재센터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중재원 서울

9) 중재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0) 중재법 제41조(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대한상공회의소 정책보고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2007.3.

12) 김광수, “경제자유구역 상사중재”, 「중재」 제314호(2004·겨울), 대한상사중재원, p.107. 대한상사중재원, 「상거래분쟁과 중재」, 2007.2, pp.53-54.

본부의 업무지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부산지역본부의 규모는 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망

(1) 동북아 중심 '환황해 경제권' 분쟁해결에 기여

동북아(한·중·일) 지역 경제권은 세계인구의 23.6%, 세계구매력 GDP의 약 24.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중국과 연계된 경제벨트에서 동북아 경제권의 한 축으로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의 급속한 팽창을 견인하고 있는 역동적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은 인구 13억의 잠재적 거대 시장에 깊은 노동력으로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매력 있는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고 미국의 포천(Fortune)지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500대 글로벌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상하이 등 중국에 진출해 있다.

중국은 엄청난 크기의 경제특구를 조성해 2006년 약 60만㏊, 6,946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세계 1위 투자유치국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 동부연안의 주요 개발구의 면적이 약 29억7,500m²(약9억평)에 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서해안권은 약 3억3,000m²(1억평)이며 그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억8000m²(6,300여만평)에 불과하다. 중국이 이처럼 동부연안으로 눈을 돌려 대규모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의 거점항구를 육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롄에서 시작해 텐진-칭다오-상하이-닝보-샤먼-푸저우-선전-광저우 등으로 연결되는 포트벨트(Port belt)는 중국의 동북아경제중심의 포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¹³⁾

동북아 중심의 '환황해경제권'에서 무역, 투자 등 국제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서 인천은 다음과 같은 유리한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중국과 북미 및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장점을 들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시간 1시간대에 중국의 청도, 대련 등 해안도시와 일본이 있고 3시간대에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가 51개가 있다. 따라서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있어 인천이 지리적 입지조건으로 유리하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한 海空 복합 물류시스템의 구축으로 국제중재센터의 입지조건으로 인천이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해공을 이용해 쉽게 제품을 나르고,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항만과 공항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국제 상사분쟁도 선진화된 분쟁해결시스템으로 해결되기를 국제기업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국제중재센터가 발전

13)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G-Economy21」(2008년 1월호), pp.15-17 참조.

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하겠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분쟁해결의 신속화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도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가진다고 하겠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도시는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로 건설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통해 공급자, 생산자, 소비자 간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실시간으로 물류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제품의 자동 결제 등 현금 없이도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 물자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분쟁해결의 신속화와 편의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¹⁴⁾

(2) 개성공단 상사분쟁 해결에 기여

개성공단사업은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금강산관광사업과 함께 남북간 3대 경협사업의 하나이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와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법¹⁵⁾을 제정, 공포하였고 개성공업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¹⁶⁾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규모는 2,000만평(공단: 800만평, 신도시: 개성시가지 400만평을 포함한 1,200만평) 규모로 2012년 완공을 목표로 3차례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체 공단건설이 완료되면 남한의 입주기업은 2,000여개이며 채용인원은 35만명(북측)으로 예상하고 있다.¹⁷⁾

인천과 개성공단의 지리적 인접성은 물류와 분쟁해결에 있어 경쟁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개방하면서 심천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것은 바로 홍콩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최대한 활용키 위한 것이었다. 개성공단은 물류 흐름에 있어 한반도 중앙회랑(평양-개성-서울)과 서부회랑(평양-개성-인천)의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은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을 경우 원자재 수급 및 생산물자의 판로에 영향을 미쳐 공단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개성지역의 경우 항만이나 공항이 없으므로 현재 물류수송을 위해서는 철도 및 도로에 의한 육로수송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 인근에는 대규모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항구나 공항이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수출입 물동량을 서부회랑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중앙회랑을 경유하여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4)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에 따른 우려가 외국기업들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풍부한 노동력에 비해 떨어지는 첨단 기술력, 연구개발의 낙후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아랑곳 하지 않는 지적재산권 침해,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거주 환경과 문화 환경도 외국기업에게 중국진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저널」(2006년 2-3월호), pp.6-8 참조].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3440호(2002.11.20).

16) 북한은 2002년 7월 1일을 기해 기존의 경제정책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취한데 이어 동년 9월에는 신의주를, 11월에는 금강산과 개성을 각각 특구로 지정, 선포하였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특구는 나진·선봉을 포함하여 모두 4개이다.

17) 현대아산, 「개성공업지구」(2005.6, Ver 2.2) 참조.

개성공단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는 개성·인천을 연결하는 육로 및 해로를 개설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인천사이에 물류축을 연결하고 양지역에 대형물류창고를 건설하여 개성공단 생산품을 육로와 해로를 통해 남한으로 수송하거나 해외로 직수출할 수 있다. 동시에 수입 원자재를 개성공단으로 공급하는 등 물류체계의 다양화 및 효율화의 창출이 가능하다. 북한의 개성·개풍지역과 남한의 인천·강화지역을 연계하는 복합물류기지를 조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육로·해로를 갖춘 복합운송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¹⁸⁾

개성공업지구법에서는 분쟁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 절차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⁹⁾ 따라서 분쟁해결의 대상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인데 다음과 같은 분쟁의 유형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개발업자로 지정된 현대아산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²⁰⁾ 간의 분쟁을 예상할 수 있다.

현대아산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 2,000만평 토지이용증을 취득하고 단계별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기관이 현대아산의 개발업자 지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다른 제3자를 개발업자로 지정한다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둘째,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측 기업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들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이 요구하는 노력, 용수, 물자의 보장과 관련하여 적기에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진출 남측기업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업자인 현대아산)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북측 지역 판매실현과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과 북한측 당사자(기관, 기업소, 단체 등)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개성공단 진출 남측 기업과 공업지구관리기관(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업자인 현대아산)간에는 기업창설 승인, 등록, 영업허가, 건설허가, 준공검사, 토지이용, 하부구조시설관리, 상품의 가격결정, 노동력 공급과 관련해서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²¹⁾

셋째,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투자자는 남측 기업이 많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공단에 입주하는 외국투자자가 제기하는 분쟁사건도 예상된다. 개성공업지구법에서는 투자자의 범위를 남측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동포, 외국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도 투자하여 기업

18) 최수영, “개성공단 개발 현황과 활성화의 과제”, 「부산외대 국제통상연구소 논문집」(한-중 및 남북한 경제 교류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2005.11.22, 부산외대), pp.31-32.

19) 개성공업지구법 제46조.

20) 개성공업지구법에서는 개성공업지구사업에 대한 최상급 기관으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을 두고 있고 하위 기관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을 두고 있는데 전자가 후자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 개성공업지구법 제25조, 제37조, 제40조 참조.

을 창설할 수 있고 지사, 영업소, 사무소를 설치하여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²²⁾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외국으로 물자가 나가는 경우, 외국인력 고용과 관련해서, 외화의 반출입 및 이윤의 외국송금과 관련하여 외국투자가 제기하는 분쟁사건을 예상할 수 있다.

앞으로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과의 물류체계의 연계는 물론 개성과 인천을 거점으로 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상사분쟁 해결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업무협조에 따라 중재원의 직원을 옴부즈만실에 파견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상사중재 관련 상담 및 홍보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재사건의 접수, 심리 및 판정 등의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지부인 국제중재센터가 설립되어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하면 인천지역 경제권과 개성공단과의 분쟁해결 연계문제도 본격 협의되고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업지구법에서는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의 한 해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제반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되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업지구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는 2000년 12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서명되고 2003년 8월 20일자로 남북한간에 발효 중인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상사분쟁해결합의서)를 말한다. 이 합의서에 따라 2003년 10월 12일 남북 당국은 남북한간의 상사분쟁 해결을 전담할 중재기구의 창설을 위해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중재위원회합의서)에 서명하였고 동 합의서는 2005년 8월 1일자로 현재 발효 중에 있다. 이 합의서에 따라 정부(통일부)는 2007년 4월 16일 대한상사중재원을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남측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은 동년 5월 2일자로 남북상사분쟁 중재사무를 전담하는 내부조직으로 남북상사중재실을 설치하였다.²³⁾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제중재센터가 설립되면 동 센터는 남북한간의 상사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원회합의서에 따라 창설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남측 중재위원회 및 북측 중재위원회)와 중재협정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협력함으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제중재센터가 개성공단 분쟁해결 촉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2) 개성공업지구법 제3조.

23)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측의 사정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공식 구성되어 업무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다. 따라서 남과 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중재규정을 공동 제정하고 중재인명부를 교환하여 공식 업무를 개시해야 할 것이다.

III. 국제중재센터의 운영방안

1. 기본적 고려사항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식의 공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가까운 장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지역이 EU 및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동북아비즈니스 중심 국가로의 육성구상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센터는 개성공단사업을 포함하여 대북 경협사업과 연계되는 상사분쟁 해결기구로도 성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2006년 3월 2일자로 발효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개성공단 제품의 해외 판로 확보 및 남북경협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개성공단 간 상사분쟁 해결의 연계방안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류체계의 편의성에 따라 개성공단 제품의 상당부분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이 이루어 질 경우 개성공단 관련 상사분쟁의 제3국 중재지로 인천이 부각될 것이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의 국제중재센터에 의한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²⁴⁾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개성공단 개발의 본격화와 함께 북미, 북일 간에 정식 수교가 되면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하여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이 활성화되는 한편 제품의 생산과 비즈니스 활동에 따른 다양한 상사분쟁의 발생이 예상되는데 국제중재센터는 분쟁해결에 있어 개성공단과 연계되는 운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천경제자유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은 분쟁 발생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의한 해결보다는 국제상사중재 등 ADR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되는 국제중재센터는 인천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 및 입주 예정의 외국기업체들에 대해 중재 등 ADR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것과 중재조항 작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수준 높게 국제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싱가포르나 홍콩 등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의 국제중재절차 모델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되게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접목시켜 이 지역의 외국기업들이 거부감 없이 채택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계약 체결시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를 선호하지 않고 싱가포

24)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체결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2005.12.13) 및 “한-EFTA FTA”(2005.7.12)도 동일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르나 홍콩 등 외국에서의 중재를 선호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²⁵⁾ 또한 국제중재 중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ICC중재의 경우 최근 수년간 한국기업이 아시아지역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ICC에서 많이 당사자로 등록된 국가 중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고 한다.²⁶⁾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의 국제중재 등 ADR제도에 의한 분쟁해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화되고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고품질의 중재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중재실무상의 운영방안

(1) 선진화된 국제중재규칙의 제정 및 적용

1999년 12월 31일 전면 개정(법률 제6083호)된 현행 중재법은 UN차원에서 제정된 보편화된 UNCITRAL 모델중재법을 대폭 수용하였지만 국제중재에 적용되는 중재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을 위시한 외국기업들은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국제성이 반영된 중재규칙이 아니면 인천에서의 중재를 기피할 것이다.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되는 국제중재센터에서는 선진화된 국제중재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재규칙도 수개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외국기업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대표적 국제중재기관인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도 2005년 5월 1일자로 시행중인 새 중재규칙을 중국어본과 영어본 외에 비영어권 국가의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의 4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²⁷⁾

국제중재규칙에는 국제중재의 일반적 원칙이 반영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제도와 절차가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재인 선임방식, 중재인보수, 집중심리방식 등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ICC중재규칙, 싱가포르 및 홍콩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규칙과의 세밀한 비교법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중재수요에 부응하고 국제중재를 활성화시키고자 기존의 중재규칙과 별도로 국제중재규칙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²⁸⁾ 동 규칙은 선진화된 국제적 중재규칙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 미국중재협회(AAA),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국제중재규칙을 검토,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 평가된다.²⁹⁾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여 운

25) 김연호,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현황과 발전방향”, 「중재」 제317호(2005·가을), 대한상사중재원, p.6.

26) 김감유,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에서의 도전과제와 활성화 방안”, 「중재」 제315호(2005·봄), 대한상사중재원, p.32.

27) <http://www.cietac.org.cn/english/news/news12.htm>(2008.1.29).

28) 동 국제중재규칙은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는데 4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향에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정한 국제중재규칙은 외국기업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중재인 선정방식 개선 및 전문중재인단 별도 구성

미국중재협회(AAA)의 경우에는 국제중재와 국내중재를 구분하고 있다. 국제중재에서 3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1인씩의 중재인을 선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 반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서는 3인 중재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사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사무국이 중재인 후보를 선정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로 인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사건에서 당사자가 중재인선정 과정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판정의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판정취소사유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³⁰⁾ 중재원이 이번에 새로이 제정한 국제중재 규칙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중재원 사무국이 일방적으로 중재인 후보자 10인을 정하고 그 후보자 중에서 당사자들이 희망순위를 표시하는 종전 중재규칙보다는 신 규칙에서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중재인 선정에 보다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볼 것이다.³¹⁾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진행되는 국제중재는 국제중재에 경험이 있고 전문성과 중립성이 확보된 중재인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중재인의 선임을 위한 투명한 절차가 확립되어야 하며 최고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panel of arbitrators)도 별도로 구성하여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중재진행상의 언어

종전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50조에서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 절차는 한국어로 진행하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가 있거나 중재인 중에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판정문도 국문과 영문이 동시에 작성되고 두가지 판정문을 모두 정본으로 취급하되 해석 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한국어본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은 국제중재 실무상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³²⁾

첫째, 중재를 진행하면서 두가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다. 중재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가지로 통일되는 것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중재인과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효율적이다.

둘째, 일방 혹은 쌍방 당사자가 국내에 주소나 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국제중재

29)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322호(2006·겨울), pp.72-75 참조.

30) 김갑유, 전계논문, pp.34-35.

31)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2조 참조.

32) 김갑유, 전계논문, p.36.

의 경우 한국어로 중재기관과 교신하고 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모든 서류를 한국어로 제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셋째, 판정문이 한국어와 영문으로 모두 작성되고 그 해석에 있어서 한국어본이 우선하는 것도 실무상으로 문제가 있다. 중재인들이 모두 외국인이거나 판정문을 작성하는 의장 중재인이 외국인인 경우 판정문을 작성하고 확인한 외국중재인들은 영문본만을 보고 확인할 것인데 해석에 있어서는 한국어본이 우선하게 된다면, 영문본을 번역한 한국어본에 잘못이 있을 경우, 중재인들이 당초 작성한 영문본과 다른 내용의 판정이 집행되는 이상한 결과를 놓게 된다.

국제중재에 있어서 외국당사사자가 자신의 변호사를 보내어 대리를 시키고 싶어도 절차 진행이 한국어로 된다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를 기피할 것이란 점은 이론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약관련 상담에서부터 계약체결의 전 과정에 자기회사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신 규칙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재언어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언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³³⁾ 따라서 중재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중재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선택하지 않더라도 후에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부가 적절한 언어를 선택하도록 요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의 국제중재절차에서 신 규칙을 적용할 경우 한국어가 아닌 영어가 중재언어가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 중재시설 완비와 중재원 직원의 전문화교육 강화

앞으로 건설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도시는 유비쿼터스 도시로 건설되며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이 지역에는 영어 민원서류가 통용되며 외국 전문 인력의 출입국제도도 개선되며 외국 교육기관과 병원의 설립이 허용되는 등 외국인 친화적 경영과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따라서 이 구역에서 진행되는 국제중재도 그에 걸맞게 중재시설이 완비된 중재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중재의 경우 시간과 비용, 그리고 공간적 제약 때문에 집중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인 및 대리인, 증인들이 수일간 체류할 수 있는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도 고려에 넣어야한다.

중재심리 진행 중 중재판정실과 중재인실, 휴게실 등 전반적 시설이 안락하고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증인이나 감정인의 원격 증언과 심리를 위한 화상회의실이 구비되어야 하며 통번역 및 속기록 작성 서비스도 불편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각 중재사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재서기로 지명되는 중재원 사무국 직원

33)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24조.

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국제중재의 경우 중재인이나 대리인이 외국에 있거나 외국에서 오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지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중재서기의 보조기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리기일 조정 및 결정, 중재절차의 진행방식 및 중인·감정인의 출석 및 심리, 기타 절차진행과 관련된 제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서기의 신속하며 세밀한 보조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의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재원 직원의 외국연수 및 중재관련 전문 교육기회의 확대, 국제중재 담당 서기그룹의 별도 인사관리 등 외국어와 중재진행 보조자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5) 제3국 중재지로서의 적합성 홍보 강화

국내외적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되는 국제중재센터는 이 지역의 개발촉진과 함께 아시아지역에서의 경쟁력 있는 분쟁해결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인천은 북경과 도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미국과 일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제3의 중립국으로 좋은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는 달리 중국과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국가이면서 같은 한자문화권의 아시아국가라는 점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관여된 국제거래에서 분쟁해결지로서의 제3중립국으로서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³⁴⁾ 또한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제3국 중재지로서도 인천이 부각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사건의 ‘인천’ 유치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관련 경제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리적, 문화적, 그리고 물류측면에서의 여건을 잘 활용하고 중재센터에서 국제중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반 중재시설이나 제도를 구축하면서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국제중재센터는 아시아지역 및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사업의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경쟁력있는 국제적 중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IV. 국제중재센터의 대외협력 방안

1. 대외협력의 필요성

‘중재’(arbitration)를 논함에 있어 고려사항의 하나는 국제상사중재(international commercial

34) 김갑유, 전계논문, p.39면.

arbitration)란 개념 자체가 국제성을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사중재’란 국가를 달리하는 상거래 당사자간에 현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현존분쟁), 혹은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장래분쟁)을 해결하는 준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이기 때문이다.

중재에 의해 상사분쟁이 해결된다고 해도 오늘날의 추세는 상설의 중재기관이 개재하지 아니하는 임시적 중재(ad hoc arbitration) 보다는 중재기관의 관리하에 절차가 진행되는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겠다. 중재제도는 기본적으로 분쟁사건을 중재에 부탁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므로 당사자는 자율적으로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나 준거법(governing law), 그리고 중재기관이나 중재판정부 구성에 합의할 수 있다. 예컨대,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중재절차는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실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동 절차에 적용되는 중재규칙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 Court of Arbitration)의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각국의 중재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협정체결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오늘날 주요 국가의 중재기관들은 외국의 중재기관과의 대외협력을 통해 국제적 중재사건의 신속하며 효율적 절차진행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1973년 일본의 대표적 중재기관인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와 한·일중재협정을 체결한 이래 현재 40여 국가의 주요 중재기관과 중재협정 내지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협력의 내용을 보면 UN차원에서 제정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절차에 참여하거나, 당사자가 중재지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국가 중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중재지를 결정하거나, 이미 내려진 중재판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거나 아니면 중재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설립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의 국제중재센터가 명실상부한 국제적 중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재관련 분야의 대외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보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 센터를 이용하는 중재고객인 외국기업들에게 국제적 중재기관으로서의 신뢰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그들의 분쟁사건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실행과제로서의 대외협력 방안

(1)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관리제도 도입

UNCITRAL 중재규칙은 1976년 4월 28일 UNCITRAL³⁵⁾ 제9차 회기에서 채택된 41개조

35)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의 약칭으로 UN국제무역법위원회(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라고 부른다.

로 구성된 중재규칙이다. 이 규칙은 UN차원에서 중재제도의 범세계적 이용촉진을 위해 고안되었는데 원래 임시적 중재(ad hoc arbitration)를 지향하고 있었으나 제도적 혹은 상설중재(institutional or permanent arbitration)를 배타적 관계로 보지 않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등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의 중재기관인 SIAC(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와 HKIAC(홍콩국제중재센터)에서는 국제중재 유치활성화를 위해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³⁶⁾

이 제도의 도입은 대형 중재사건의 중재절차 진행시 제3국 중재지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기 위해서나 이 구역에서의 국제중재의 활성화와 직접 관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북경과 도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미국과 일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제3의 중립국으로 적합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물류 체계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분쟁사건의 제3국 중재지로서도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중재센터에서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절차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국제중재 진행의 보편성과 중립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주요 국제중재기관과의 중재협정 체결

가. 기존의 협정에 따른 협력모델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국제중재센터가 설립되고 중재심리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지원체제가 구축되면 국제중재사건의 진행에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한 중재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중재기관의 규칙에 따른 중재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시설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 서울에서 연간 여러 건의 ICC, LCIA 등의 규칙에 의한 국제중재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재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대부분 호텔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³⁷⁾ 이는 인천지역 국제중재센터의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시사해 주는 점이 크다고 생각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국제중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 지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의 투자계약 등 관련 계약서에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를 ‘인천’으로 하는 중재조항의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36)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는 동 센터의 관리하에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절차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재조항을 권고하고 있다.

* Arbitration Clause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Administered by the HKIAC :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or the breach, termination or invalidity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Hong Kong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in accordance with the HKIAC Proced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force at the date of this contract. 이 조항에 따를 경우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은 1인이 원칙이나 당사자 합의로 3인 중재인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37) 김갑유, 전계논문.

그러나 중재지 결정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따라 기본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며 우리나라 당사자의 희망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규모 프로젝트에 관련된 인천 진출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ICC 등 국제 중재기관의 중재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이 1978년 ICC측과 중재시설 제공을 주목적으로 체결한 한·ICC협정의 모델을 인천 국제중재센터의 협력모델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ICC협정의 당사자는 4개 기관이다. 즉,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 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 Court of Arbitration) 및 국제상업회의소 한국 국내위원회(ICC Korean National Committee)이다. 이 중 협정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자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이다.

한-ICC협정의 특징은 종래의 중재협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재관련 정보나 자료교환의 차원을 넘어,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세미나와 회의를 공동으로 조직하여 개최하며 ICC 중재사건의 진행에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이 ICC 중재법원의 중재업무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로서, ① ICC 중재법원의 요청에 따라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을 추천하며³⁸⁾, ② 중재지가 서울로 된 경우 중재심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실에서 열리며 대한상사중재원은 ICC 중재인에게 그 자신의 중재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중재관리상의 지원(속기, 통역 등)을 하도록 하였다³⁹⁾.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중재센터는 ICC협정의 유형을 보완하여⁴⁰⁾ ICC는 물론 싱가포르, 홍콩, 중국, 미국 등의 중재기관과도 유사한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제중재 활성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나. 새로운 형태의 중재협정 체결방안

무역, 투자 등 국제적 상사분쟁사건을 중재로 해결함에 있어 분쟁당사자에게 민감한 부분은 어디에서 중재가 진행되는가의 ‘중재지’에 관한 문제와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지(서울 혹은 홍콩 등)에 관한 문제에 합의한 경우에도 해당 중재지에 소재하는 중재기관(서울인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인)에서 동 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물론 이러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즉 그렇지 않은 경우란 예컨대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실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지만 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38) 한·ICC 중재협정 제5조.

39) 한·ICC 중재협정 제6조.

40) 중재뿐만 아니라 협상(negotiation), 압선(mediation), 조정(conciliation), 사실조사(fact-finding), 간이심리(mini-trial) 등 ADR제도의 세번 해결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규칙이나 미국중재협회(AAA)의 중재규칙을 적용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다면 분쟁금액이 큰 대형 중재사건의 경우 외국측 당사자에게 상당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제중재센터는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외협력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홍콩국제중재센터는 국제중재사건의 홍콩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즉, ①홍콩의 홍콩국제중재센터에서, ②3개 주요 외국중재기관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국제상업회의소 및 미국중재협회의 각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조항을 만들어 외국 당사자들에게 그 이용을 권고하고 있는데⁴¹⁾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제중재 진행과 관련하여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제중재센터도 외국투자기업의 국적을 고려하여 해당 주요국의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서 인천에서 국제중재사건이 진행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개성공단 등 대북 경협사업 관련 상사분쟁의 인천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이미 고찰한바가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중재센터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⁴²⁾와의 상호협력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3년 8월 20일자로 남북한 간에 발효 중인 상사분쟁해결합의서에서 ICSID의 관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⁴³⁾ 협력

41) 1. LCIA의 규칙에 따라 중재가 진행되는 경우의 중재조항 :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cluding any question regar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under the Rules of the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which rules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this clause.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in Hong Kong at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계약의 존재, 유효성 혹은 종료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이 계약으로부터 혹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에 회부되어 런던국제중재법원의 규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중재지는 홍콩의 홍콩국제중재센터로 한다)

2. ICC의 규칙에 따라 중재가 진행되는 경우의 중재조항 :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in Hong Kong at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이 계약으로부터 혹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규칙에 따라서, 또한 동 규칙에 따라 선정된 1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중재지는 홍콩의 홍콩국제중재센터로 한다)

3. AAA의 규칙에 따라 중재가 진행되는 경우의 중재조항 :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shall be determin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in Hong Kong at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이 계약으로부터 혹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논쟁이나 클레임은 미국중재협회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중재지는 홍콩의 홍콩국제중재센터로 한다)

42) 세계은행(World Bank)의 주도로 「일방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협약을 ICSID협약 또는 워싱턴협약이라고 하는데 1965년 3월 18일 미국의 워싱턴에서 채택되었고 1966년 10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투자분쟁에 관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구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이다. 우리나라에는 이 협약에 1966년 4월 18일에 서명한 후 1967년 2월 21일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동년 3월 23일 우리나라에 발효하였다.

43)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0조(중재판정부의 구성) 제4항 : 제3항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의장중재인 선정을 의뢰할

의 내용은 개성공단 상사분쟁사건이 제3국 중재의 형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제중재센터에서 진행될 경우 중재판정부 구성에서 일정한 경우 ICSID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3. 남북한 분쟁해결 촉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현재 남북한 간에는 남북한 경제교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상사분쟁해결합의서)가 2003년 8월 20일자로 발효 중에 있다. 또한 여기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은 분쟁해결기구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중재위원회합의서)도 채택하였음은 이미 고찰한바 있다.

남북한 간의 상사분쟁해결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중재업무와 관련시킨다면 개성공단 발생분쟁의 해결촉진과 관련된 협력방안이 주된 내용이 된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한기업이 북한측 당사자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 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진출한 외국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개성이나 북한지역에서 분쟁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제3국 중재자로서 인천을 선호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제중재센터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제3국 중재자로 인천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중재진행을 원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제3국 중재기관으로는 북경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홍콩국제중재센터,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혹은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리적으로 인접성이 있고 선진화된 중재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으며 이를 중재기관이 소재하는 국가 모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위한 UN협약(뉴욕협약)의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 어느 경우이든 협력의 주체는 남북한간의 상사분쟁해결합의서에 의해 가까운 장래에 설립될 중재기관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및 남북한 기존의 중재기관(남한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의 국제중재센터의 3자가 협력하는 형태의 중재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재절차에 적용할 중재규칙으로는 남북한이 모두 UN의 회원국이란 점과 국제성을 가진 규칙이란 점을 고려할 때 UNCITRAL 중재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동북아 공동분쟁해결제도 구축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기본구상은 동북아시아의 물류 및 비즈니스의 허브(Hub)를 달성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경제중심국가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북·미, 북·일간에 수교가 현실화 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중일 3국간의 FTA체결 등 역내 간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상사중재원과 그 지부에 해당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중재센터는 이 경우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에도 대비해야 한다.

동북아 경제권이 FTA로 결속되는 경우 공동분쟁해결의 근거 및 분쟁해결기구 설립의 법적근거는 CAMCA의 경우와 같이 FTA 내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CAMCA(아메리카대륙 상사중재 및 조정센터)는 「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의 약자이다. 이 기구는 NAFTA 제2022조⁴⁴⁾에 의거하여 NAFTA역내의 사적 상사분쟁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중재협회(AAA)와 캐나다 및 멕시코의 대표적 중재기관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재기관이다. CAMCA는 통일된 규칙과 정책 그리고 행정절차를 가지고 있고 참여 중재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역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은 참여하는 3국 중재기관의 어느 사무소에나 접수되어 처리될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FTA체결 이전이라도 동북아분쟁해결기구 설립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모델 제시는 가능한데 그 모델은 2003년 한·중 양국간에 서명된 ‘사법공조조약’이

44) NAFTA 제2022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제1항 : Each Party shall,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use of arbitration and other mean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between private parties in the free trade area.(각 회원국은 자유무역지대내의 사적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중재,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 이용되도록 최대한 촉진한다.)

제2항 :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provide appropriate procedures to ensure observance of agreements to arbitrate and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such disputes.(이를 위해 각 회원국은 분쟁사건에서 중재합의가 준수되도록 하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되도록 적절한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제3항 : A Party shall be deemed to be in compliance with paragraph 2 if it is a party to and is in compliance with the 1958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or the 1975 Inter-Americ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어느 회원국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1958)’이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협약(1975)’의 가입국으로 이를 준수하고 있다면 상기 2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항 : The Commission shall establish an Advisory Committee on Private Commercial Disputes comprising persons with expertise or experience in the resolu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The Committee shall report and provide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general issues referred to it by the Commission respecting the availability, use and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and other procedures for the resolution of such disputes in the free trade area.(자유무역위원회는 사적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 기타 절차의 이용가능성, 이용 및 효과에 관하여 자유무역위원회로부터 의뢰 받은 일반적 사항에 관하여 자유무역위원회에게 보고하고 권고해야 한다.)

다.⁴⁵⁾ 이 조약의 체결은 한국과 인적·물적 교류가 많기 때문에 양국 간 민사 및 상사사건에 있어서 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상사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에 기여하는데 있다.

사법공조조약에서 ‘商事’ 부분을 보면, “당사국은 뉴욕협약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 내려진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한다.”라는 문언이다. 이는 한·중 양국이 뉴욕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양국 간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적분쟁의 해결수단으로 ADR제도의 최종 수단인 상사중재제도를 양국이 승인할 뿐만 아니라 중재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보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정부 당국의 관심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서는 동북아 공동중재기구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 한·중·일 3국간의 ‘상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한·중·일 FTA체결 이전이라도 CAMCA창설의 법적 근거인 NAFTA 제2022조의 취지를 동 조약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중·일 3국의 중재기관은 이미 체결되어 있는 중재협정의 정신에 따라 동북아 공동기구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행을 위한 연구에 착수할 것과 각국의 책임 있는 당국에 정책적 건의를 해야 한다.

V. 결 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급증하는 동북아 물동량 선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다.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세계 최고수준의 인천공항을 활용하여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및 육해공이 연계된 복합물류거점으로 성장하고 명실상부한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상사분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재법상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적 상사분쟁을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상설의 중재기관이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대형 국제중재사건의 국내 유치는 매우 빈약하며 한국 기업이 관련된 국제사건의 상당수도 선진화된 외국의 중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중재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연락사무소 규모와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속히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45) 정식 명칭은 「한·중국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이며 2003년 7월 7일 북경에서 우리나라의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과 리짜오싱(李榮星) 중국 외교부장관간에 서명되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에 설치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지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 및 비즈니스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사분쟁을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분쟁해결제도인 중재 등 ADR제도에 의해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국제중재센터로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사항이 반영된 국제중재센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제중재센터의 설립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제중재센터는 명실상부한 국제적 규범과 기준 및 인적, 물적 요소가 충족된 최고의 중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제중재센터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유리성과 양질의 중재서비스를 통해 대형 중재사건의 제3국 중재기관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대형사건의 국내유치에도 적극 기여하는 분쟁해결기구로 성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센터는 북한, 특히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에 대해서도 분쟁해결기관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중재진행을 위한 제반 편의성과 인적·물적 시설을 제공하는 국제적 중재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논문〉

김경배,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2005.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5.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제1권), 박영사, 2007.

장문철 외, 「UNCITRAL모델중재법의 수용론」, 세창출판사, 1999.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G-Economy21」(2008년 1월호).

대한상공회의소 정책보고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2007.3.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322호(2006·겨울).

_____, 「외국중재법규집」(제1집), 2005.

_____, 「상거래분쟁과 중재」, 2007.2.

대한상사중재원·한국중재학회, 「주석 중재법」, 2005.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저널」(2006년 2-3월호).

한국국제상학회·중앙대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6년도 하계공동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6.9. 목원대).

현대아산, 「개성공업지구」(2005.6, Ver 2.2).

김갑유,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에서의 도전과제와 활성화 방안”, 「중재」 제315호(2005·봄), 대한상사중재원.

김광수, “경제자유구역 상사중재”, 「중재」 제314호(2004·겨울), 대한상사중재원.

김상호, “상사분쟁해결촉진을 위한 한·중 중재기관간 협력의 과제”, 「중재연구」 제15권 제2호(2005.8), 한국중재학회.

_____, “개성공단개발과 상사분쟁의 해결”,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7호(2006.5),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김연호,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현황과 발전방향”, 「중재」 제317호(2005·가을), 대한상사중재원.

문형근, “NAFTA 상사중재 및 조정기구에 관한 고찰”, 「중재」 제299호(2001·봄), 대한상사중재원.

장승화·김갑유·임영철, “특집: 국제중재규칙 제정 및 시행에 대한 전망”, 「중재」 제323호(2007·봄), 대한상사중재원.

최수영, “개성공단 개발 현황과 활성화의 과제”, 「부산외대 국제통상연구소 논문집」(한·중 및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2005.11.22, 부산외대).

KCAB, Arbitration News from Korea, September, 2006.

Kwang-Soo, Kim,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East Asia; Issues, Challenges and Prospects", ICC/KCAB/KOCIA Conference in Seoul, Korea, 26-27th October 2006.

Investment Treaty News(ITN)(April 27, 2007),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www.iisd.org/investment/itn).

<http://www.cietac.org.cn/english/news/news12.htm>(2008.1.29).

〈법규, 협정 등〉

한국 중재법(법률 제6626호, 2002년 1월 26일 개정).

한국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8372호, 2007년 4월 11일 개정).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2004년 12월 13일 대법원 승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07년 1월 25일 대법원 승인).

대한상사중재원 한-ICC업무협조약정(1978).

북한 개성공업지구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3440호, 2002.11.20).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2003년 8월 20일 남북한 발효).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2005년 8월 1일 남북한 발효).

한·중국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2003.7.7).

ABSTRACT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within Incheon Free Economic Zone

Sang-Ho Kim

Northeast Asia is increasingly making a transition to distinctive and crucial region in the 21st Century and growing into one of world's top three economic spheres along with the EU and NAFTA. In 2003,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hub country plan as an important agenda. As a means of coping with the changing global environment, Korean government designated Incheon in 2003 as the country's first Free Economic Zone ahead of Busan and Gwangyang Bay in the south of the country because Incheon has a geographical advantage linking North America and Europe with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Incheon Seapor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arbitral body entitled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IAC) within Incheon Free Economic Zone(IFEZ). For the purpose of this, the writer in this paper, reviewed the necessity of the IAC's establishment and its legal basis as well a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enter. Also, the writer presented plans for how to operate the IAC and how to cooperate with the key arbitral organizations of foreign countries for the settlement promotion of commercial disputes including trade and investment.

With development of the IFEZ, world-renowned enterprises will invest in the Incheon economic bloc and conduct economic activities, business operation, marketing, logistics, financing, etc. In this connection, diverse types of commercial disputes are expected to occur between foreign companies entering the IFEZ and Korean firms.

In this connectio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has been operating its liaison office in the IFEZ since 2004. However, in view of the increasing arbitration demand, the IAC should be set up in the IFEZ in the near future by the posi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in the respect of both administration and finance because the free economic zone-related law provides for the installation of arbitration organization.

For the success of the IAC, the Center will have to provide not only good quality of arbitral services that can satisfy arbitration parties but also need to conduct researches and

make efforts so that arbitration can be utilized well in the IFEZ.

If the IFEZ can provide advantageous business environments to those multinational enterprises intending to the Incheon economic bloc, the IAC will also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in view of the geographical advantage and logistic benefit of the IFEZ.

Finally, this paper also suggests a new model for a joint dispute resolution system by the initiative of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arbitral organizations for the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within Northeast Asia, for which the CAMCA(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 of NAFTA can be a good example

Key Words : Incheon Free Economic Zone, set up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operation of the Center, KCAB, CIETAC, AAA, HKIAC